



저소득계층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교육 IRA 검토 필요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요약

■ 미국은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부터 대학교육비까지 세금을 면제하여 주는 교육 IRA(Educational IRA)를 도입·운영하여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노후대비와 연금제도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교육 IRA를 설정하는 경우 연간 2,0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인출 시 세금 면제)을 주고 있으며 교육비에 사용하고 남은 적립금은 다른 형제·자매에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교육 IR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의 이전이 자유롭고 수혜자를 계좌의 이전 없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최근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노후준비 부족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육 빈곤층인 에듀 퓨어(Education Poor)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의 사교육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됨. 또한 미국의 교육 IRA에서 보는 것처럼 저소득계층이 미연에 교육비 재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최근 우리나라는 교육비 등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출로 인해 연금제도 가입 등을 통한 노후대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2012년 8월)에 의하면 노후준비 부족의 주요 원인은 자녀의 양육비(32.4%),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족(20.1%) 등인 것으로 조사됨.
-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2009년 기준)¹⁾에 의하면 자녀 출생 후 대학 졸업 시까지 22년간 자녀 한명에게 지출되는 총 양육비는 약 2억 6,204만 원이며 이중 자녀 교육비가 38.3%를 차지함.
- 이러한 자녀 교육비로 인해 교육 빈곤층인 에듀 퓨어(Education Poor)²⁾ 가구(2011년 기준)는 전체 조사대상가구(632만 가구)의 13%인 것으로 나타남.³⁾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 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건강복지정책이슈』, pp. 241~243.
 2) 빚을 지고 있으면서 교육비 지출을 과다하게 하는 가구.
 3)

■ 이런 측면에서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미국의 교육 IRA 운용은 안정적인 노후대비와 연금제도 활성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현재 미국의 IRA는 전통형 IRA, 사용자보조 IRA, Roth IRA, 교육 IRA, 배우자 IRA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⁴⁾
- 가입 대상 및 세제 혜택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인퇴직계좌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점이 단일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과 근본적 차이임.

■ 미국의 교육 IRA (Educational IRA,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⁵⁾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계좌를 설정하는 경우 유치원 교육비부터 대학교육비까지 세금을 면제하여 주는 프로그램임.

- 전통형 IRA, Roth IRA 등과 별도로 계좌 설정이 가능하며, 계좌 설정은 자녀 및 손자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함.
- 18세 미만의 자녀 및 손자를 위해 교육 IRA를 설정한 후 일년 동안 적립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한 자녀당 2,000달러로 세법에서 제한하고 있음.
 - 다만, 매년 개인 소득세의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손자를 위하여 교육 IRA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손자의 다른 교육 IRA에 얼마가 적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총 적립액이 2,000달러(2009년 기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립하여야 함.
 - 할아버지의 세법상 소득이 110,000달러(약 1억 2,408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 손자를 위해 적립할 수 없도록 규정

■ 또한, 교육 IR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의 이전이 자유롭고 수혜자를 쉽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자녀는 언제든지 적립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교육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인출 금액은 전액 면세 혜택을 받음.

3)현대경제연구원(2012. 8), 「국내 가구 교육비 지출 구조 분석」.

4)전통형 IRA는 가입대상 범위가 넓고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매년 기여액을 납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사용자보조 IRA(Employer-Sponsored IRA)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해 퇴직연금을 보조해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임. Roth IRA는 일정액 이상의 고소득자가 전통형 IRA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활용되며 배우자 IRA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임.

5)교육 IRA는 Educational IRA,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로 불리움.

- 다만, 자녀가 30세가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모든 적립금액을 인출하도록 규정됨.

- 매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상황보고서(Form 1099-Q)를 받게 되는데, 이 보고서를 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하여 적절한 세금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자녀가 교육 IRA 및 529 플랜⁶⁾ 두 곳에서 받은 인출 금액이 실질 교육비(사교육비 제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면세되지 않으며 이자 소득세와 벌금이 부과됨.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학자금 저축뿐 아니라 이자 소득에 대한 면세 효과의 장점이 있는데 반해 조건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진다면 10%의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함.
- 자녀의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모든 적립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고 교육에 사용하고 남은 적립금은 수혜자의 형제·자매에게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교육비 부담이 노후준비 미흡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교육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형 퇴직연금 등에 교육비 지원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사교육 근절대책의 효과가 여전히 미흡하므로 현재 제도를 재평가하여 효과성이 있는 대책을 보다 강구해야 할 것임.
- 또한, 미국의 교육 IRA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교육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의 검토가 필요함. [kiri](#)

6) 자녀의 대학교육비만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성 저축계좌임.